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05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박홍배 · 이광희 · 김남근
김우영 · 이정현 · 박 정
김한규 · 민병덕 · 박정현
정태호 · 김현정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 변동 등으로 에너지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국민이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정책 · 제도 · 시장 ·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보 · 소통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이 에너지 정보의 수집 · 정리 · 제공, 에너지 이용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 활동, 에너지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교육·홍보 및 민관 협력 등 정보·소통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 집행이나 재정 지원과는 구분되는 정보·소통 기능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에너지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역할 및 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정책, 제도 및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정리 및 제공
2. 에너지 기술, 산업 및 생활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조사·분석 및 이해 증진 활동
3. 에너지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4. 국민의 에너지 이용 행태 개선과 정책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소통·문화사업
5. 에너지 정보 및 정책 전달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의 기획 및 운영

6. 에너지 정보·소통 분야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다른 법령에 따라 재단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 지자체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2(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역할 및 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u> <u>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에너지 정책, 제도 및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 · 정리 및 제공</u> <u>2. 에너지 기술, 산업 및 생활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조사 · 분석 및 이해 증진 활동</u> <u>3. 에너지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의 구축 · 운영 및 콘텐츠의 개발 · 보급</u> <u>4. 국민의 에너지 이용 행태 개선과 정책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 홍보 및 소통 · 문화사</u>

	<u>업</u> <u>5. 에너지 정보 및 정책 전달을</u> <u>위한 민관 협력 사업의 기획</u> <u>및 운영</u> <u>6. 에너지 정보·소통 분야의</u> <u>국내외 교류 및 협력</u> <u>7. 다른 법령에 따라 재단이 수</u> <u>행할 수 있거나 국가, 지자체</u> <u>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u> <u>8.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u> <u>하는 데 필요한 업무</u>
--	---